

예 산 총 칙

2012년도 추경 4 회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86,206,279	8,586,188
일반회계	236,258,144	7,087,744
특별회계	49,948,135	1,498,444
공기업특별회계	19,134,067	574,022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9,134,067	574,022
기타특별회계	30,814,068	924,422
수질개선 특별회계	10,993,004	329,790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110,448	3,313
주택사업 특별회계	14,796,042	443,881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853,131	25,594
자활기금 특별회계	1,365,535	40,966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1,153,442	34,603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1,169,078	35,072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343,320	10,300
기반시설 특별회계	30,068	902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847,539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최종 추가경정예산 성립후 국가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잔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는 성립된 것으로 간주처리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채무상환원리금,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